#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허5747 거절결정(상)

원 고 A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선영, 옹선영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신율건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2. 15.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1. 8. 25. 2020원103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3호증)
    -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0-2019-85813호/ 2019. 6. 3.
    - 2) 74: HUAWEI FreeBuds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인-이어 헤드폰(in-ear headphones), 이어폰, 마이크로폰, 스마트폰용 무선헤드셋
  - 나. 선등록상표(갑 제2호증)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1253814호/ 2016. 10. 25./ 2017. 5. 18.

# **FREEBUDS**

- 2) 7-d: **프리버즈**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동작인식USB허브,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금전등록기/계산기/데이터처리장치 및 컴퓨터,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통신용 헤드셋, 음향/데이터 또는 영상의 방송/기록/송신 또는 재생용 장치, 음향 및 영상 기록/저장/송신 및 재생용 장치, 이어폰 및 헤드폰, 전선 및 케이블, 전자계산기, 증폭기(앰프), 컴퓨터 네트워크용 허브/스위치 및 라우터, 스피커시스템, 컴퓨터주변기기.

키보드, 카메라, 휴대용충전기, 데이터 저장장치

4)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C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의 2019. 6. 3.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1. 25.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2) 원고는 2020. 1. 23.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HUAWEI' 부분은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가지지만 'FreeBuds'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서 관찰되거나 식별력이 강한 'HUAWEI' 부분에 의하여 관찰되어,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 3. 1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2019. 11. 25.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 3)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원1039호로 심리한 후 2021. 8. 25.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HUAWEI' 부분은 식별력이 매우 높은 반면, 'FreeBuds' 부분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이 사

건 출원상표는 'HUAWEI' 부분 또는 'HUAWEI FreeBuds' 전체로서 인식된다. 이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관련 법리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773 판결 등 참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나 내용은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 므로, 수요자나 거래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 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후896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분리 인식 가능성

-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모두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들로서, 문자열 'HUAWEI' 부분과 문자열 'FreeBuds' 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HUAWEI'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설립된 가전제품 회사의 상호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다. 'FreeBuds' 문자열 부분은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영문 'Free' 부분과 꽃봉오리를 의미하는 영단어 'Bud'의 복수형인 영문 'Buds' 부분이 결합한 것으로서역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다.
- (2) 나아가 'HUAWEI' 부분과 'FreeBuds' 부분은 외관상 띄어쓰기로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가전제품에는 제조사의 상호와 별도로 상품명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요자들로서는 'HUAWEI' 부분과함께 사용된 'FreeBuds'를 상호와 독립된 상품명으로 인식하기 쉽다. 따라서 'HUAWEI' 부분과 'FreeBuds'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FreeBuds'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 나) 선등록상표의 분리 인식 가능성

# **FREEBUDS**

선등록상표 ' 프리버즈 '는 상단 영문 'FREEBUDS' 부분과 그 한글 음역인 하단 국문 '프리버즈' 부분이 상하단의 2단으로 여백을 두고 분리되어 있어 외관상확연히 구분되고, 상하단의 각 부분이 결합하여 독자적인 의미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보기 어려워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양 부분은 분리되어 상하단의 문자 부분 'FREEBUDS', '프리버즈'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

# 다) 표장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FreeBuds' 부분만으로, 선등록상표는 '**FREEBUDS**'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이 동일하다. 나아가 'FreeBuds'는 Free와 Buds가 결합한 조어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자유로운 꽃봉오리 등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관념 또한 동일하다.

#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FreeBuds' 부분, '**FREEBUDS**'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하다.

###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인-이어 헤드폰(in-ear headphones), 이어폰, 마이크로폰, 스마트폰용 무선헤드셋'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휴대용 음향재생장치, 통신용 헤드셋, 이어폰 및 헤드폰'은 모두 헤드폰, 이어폰 등 휴대할 수 있는 음향장치에 관한 것으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FreeBuds', '**FREEBUDS**' 부분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 에 관하여

### (1)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FreeBuds' 부분은 수요자들로 하여금 지정상품인 '무선이어폰'을 직감하게 하여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HUAWEI' 부분과 'FreeBuds'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없고, 식별력이 강한 'HUAWEI' 부분만으로

또는 'HUAWEI' 부분과 'FreeBuds' 부분이 결합된 전체로서 인식된다. 이를 기초로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 (가) 'Buds'는 이어폰을 의미하는 'earbuds'의 약자에 해당하는 점, 'buds' 단어를 제품명에 포함하는 이어폰 제품이 출시되는 등 'buds'가 관련 업계에서 이어폰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는 점, 국내 수요자들 또한 'buds'를 이어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9류로 지정하고 'buds'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출원・등록되어 있는 점, 다수 회사들이 상호와 문자열 'Freebuds'를 결합하여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당 상품명에서 'Freebuds' 부분은 해당 상품의 종류(무선 이어폰)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uds'는 '이어폰'을 직감하게 한다.
- (나) 'Free'는 IT 기기에 사용된 경우 '무선' 또는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한다.
- (다) 'FreeBuds'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무선 이어폰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인식 된다는 점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 (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서는 'FreeBuds'가 지정상품인 헤드셋, 이어폰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 (2) 판단

갑 제7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FreeBuds' 부분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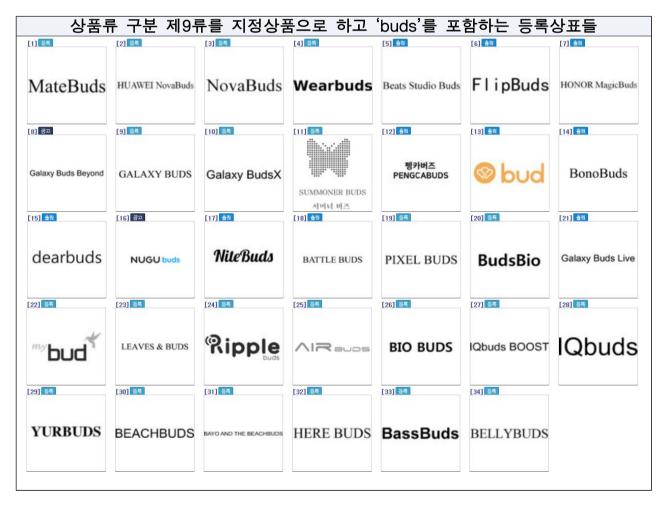
-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uds' 부분이 수요자로 하여금 '이어폰'을 직감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
- ① 'bud'는 '싹, 꽃봉오리, 눈'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단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② 'earbuds'가 초소형 헤드폰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중 'buds'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earbuds'의 약어로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다음과 같이 제품명에 'buds'를 포함하는 무선 이어폰 제품들이 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유명 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동종 제품들이 다수 출시되는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무선 이어폰 제품들에 공통적으로 'buds' 부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buds' 부분이 포함된 특정 유명 상표의 유사상표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제품명	제조사	제품명	제조사
SLEEPBUDS II	BOSE	BEATS STUDIO BUDS	Dr.Dre
Echo buds	Amazon	Echo buds	Amazon
Pixel buds	Google	Uni-Buds, NeoBuds Pro	EDIFIER
Airbuds	SMC	NUGU buds	iRiver
Verve Buds 100	Motorola	ZenBuds	Amaz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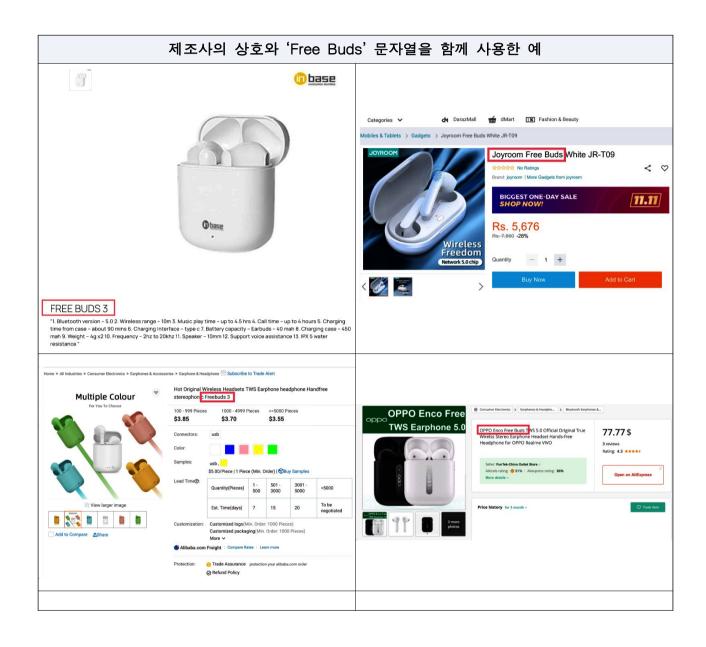
④ 검색 포털 엔진인 네이버에서 기간을 2017. 6. 1.부터 2019. 6. 1.까지로 설정하여 '버즈'를 검색한 결과물에 무선 이어폰에 관한 게시물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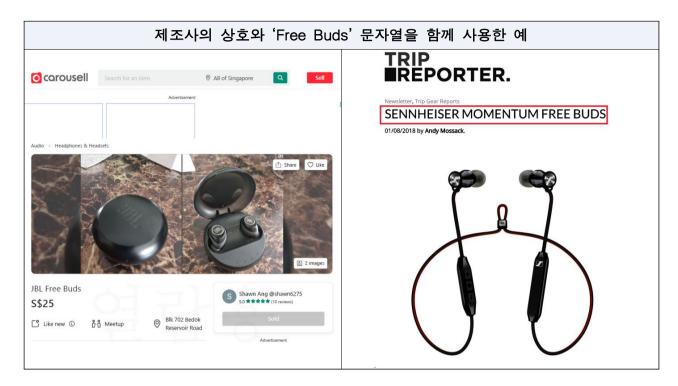
하다. 그러나 이는 제품명에 '버즈'가 포함된 일부 무선 이어폰에 관한 게시물들이 검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⑤ 선등록상표의 등록 이후 다음과 같이 지정상품을 상품류 구분 제9류로 정하고 표장에 'buds'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수는 34개에 불과하다. 나아가 상품류 구분 제9류는 전자기기, 기록매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과학 용 기기 등 그 범위가 넓으므로, 위 상표들의 지정상품에 '이어폰'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무선 이어폰 제품에 관한 일부 쇼핑몰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제조사의 상호와 문자열 'Free Buds' 또는 'Freebuds'이 함께 나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Free Buds' 또는 'Freebuds' 부분이 해당 상품의 종류(무선 이어폰)를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갑 제21호증의 1의영상에 의하면, 'Free Buds 3'이라는 문자열이 화면 좌측 하단(무선 이어폰 그림 아래)에 표시되고 회사의 상호는 이와 분리되어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의하면, 오히려 'Free Buds 3' 부분이 제품명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buds' 부분이 수요자로 하여금 '이어폰'을 직감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
- ① 'Free'는 '자유로운, 통제를 받지 않는, 무료의'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 ② 일부 무선 이어폰 상품의 상품명에 문자열 'Free'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시된 사례가 많지 않아 문자열 'Free'가 수요자에게 '무선'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상표의 'Free' 부분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별력을 부정한 특허심판원 심결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해당심결들은 모두 'Free' 부분이 사전적 의미인 '자유로운' 또는 '무료의'를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Free' 부분이 '무선'을 직감하게 하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심판번호	구성	지정상품	심결의 이유
2001원1569	(-1'CC 신한문행 Shinhan Bank	상품류구분 제9류의 자기식 크레디트 카드 등	'Free Card' 부분이 '공짜카 드', '돈이 들지 않는 카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카드'를 의미
2018원2150	WITHFREEMARKET 위드프리마켓	상품류 제35류의 사 업 목적의 프리마켓 개최업, 프리마켓 운 영 관련 사업관리보조 업 등	'WITHFREEMARKET'이 '자 유시장과 함께'를 의미
2008원1546	& Location free	상품류 구분 제9류의 휴대용 텔레비전 등, 상품류 구분 제28류 의 휴대용 비디오게임 플레이어	'LocationFree' 부분이 '위치 장소 선정이 자유로운' 또는 '위치(장소)에 구애됨이 없 는'을 의미
2013원8600	KINDLE FREETIME	상품류 제9류의 태블 릿 컴퓨터, 전자책 리 더기 등, 서비스업 구분 제35 류의 컴퓨터 소프트웨 어 소매점업, 게임용 품 소매점업, 장난감 소매점업 등	'FREETIME' 부분이 '자유시 간에 이용 가능한 상품(서비 스업)', '자유시간을 갖게 해 주는 상품(서비스업)' 등을 의미

(다) 원고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에서 "귀하께서 'Freebuds(프리버즈)'라는 단어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라는 주관식 질문에 응답자의 16.8%가 이어폰, 15.4%가 무선/무선이어폰, 3.2%가 자유로운 이어폰, 2.6%가 무료 이어폰이라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의 52.0%가 이어폰과 관련한 응답을 한 사실, "다음 중 무선 이어폰 제품을 의미하는 단어로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8%가 'FreeBuds(프리버즈)'라고 응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설문조사결과는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① 위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이 보유한 응답자 풀에서 추출한 표본을 대 상으로 한 것이므로, 해당 표본이 전체 수요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위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전자 우편으로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전자 우편 설문의 경우 응답자가 설문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문항 구성에 의하여 답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③ 구체적으로 위 설문지 문항에는 "귀하께서는 다음 상표가 표기된 블루투스 이어폰(또는 블루투스 헤드셋) 제품을 보신다면, 그 제품은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인식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HUAWEI FreeBuds'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응답자들은 'HUAWEI FreeBuds'가 특정 회사의 블루투스 이어폰(또는 블루투스 헤드셋)에 관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설문지에는 앞서 본 질문의 후속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식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1. HUAWEI, 2. Free, 3. Buds, 4. FreeBuds, 5. HUAWEI FreeBuds"라는 보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응답자들은 'HUAWEI FreeBuds'를 HUAWEI와 FreeBuds로 분리하여 그 의미를 새기게 되고, 그중 상호에 해당하는 'HUAWEI'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FreeBuds' 부분이 제품 자체, 즉, '블루투스 이어폰(또는 블루투스 헤드셋)'을 가리킨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다.

-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서 'FreeBuds'가 지정상품인 '헤드셋, 이어폰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 인식되더라도 'HUAWEI' 부분만이 요부가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HUAWEI', 'FreeBuds' 부분이 분리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한 식별력을 지닌 저명상표인 'HUAWEI' 부분에 한하고, 'FreeBuds' 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여 단독으로 요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UAWEI' 부분과 'FreeBuds' 부분이 분리 인식되는 이상 분리되는 부분 각자가 수요자들에게 출처표시로서 인식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소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 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

####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